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‘승인’을 받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미리 ‘통보’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20581호, 2024. 12. 20. 공포, 2025. 6. 2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시 통보사항 등(안 제4조 개정)

-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안을 지정 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산림청장은 수정·보완을 요구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함

나.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추가(안 제11조제2항제14호 신설)

다. 국·공립수목원 설치기준 중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(별표 1 개정)

- 사립·학교수목원이 기부채납되어 국·공립수목원이 된 경우 사립·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2ha 이상을 적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2. 15. ~ 3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“지정목적, 위치·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안을 말한다.

③ 산림청장이 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립수목원”을 “국립수목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국립수목원”을 “국립수목원”으로 한다.

14.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) ① (생략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정의 필요성, 지정면적·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 1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: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2.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: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	제4조(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“지정목적, 위치·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안을 말한다.

관할 시·도지사를 경유하여

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

<신 설>

제11조(입장료 등의 징수기준) ①
(생 략)

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
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
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~ 13. (생 략)

<신 설>

③ 국공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
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
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
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
있다.

③ 산림청장이 법 제6조의2제2
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
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
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려는
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
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입장료 등의 징수기준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국립수목원-----

-----.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유
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
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
고시하는 사람

③ 국립수목원-----

---.